

(국민의힘, 용산2)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최윤희 의원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산2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최윤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는 인권종합계획 수립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 대응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따라 계획 수립 주기가 3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상시 운영 필요성이 낮으며, 실제로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실적도 2023년에 단 1회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여 필요할 때만 운영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은 이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세칙은 시장이 정하도록 변경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하였습니다(안 제45조제1항).

둘째, 위원 해촉 관련 조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대체 가능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현행 제46조제7항 삭제).

셋째, 위원회의 회의는 안전 발생 시 시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7조제2항).

넷째, 운영세칙은 시장이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안 제49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법령의 정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